

● 대한산업안전협회 시설안전본부 주요사업안내

-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 - 정기안전점검, 정밀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
- 건설기술진흥법
 - 정기안전점검, 초기점검
- 건축법
 - 유지관리 정기점검
- 법적 외 자율안전진단
 - 내진성능평가, 사면·사후진단, 진동·소음측정, 하중변경등으로 인한 구조안전진단, 지반안전성검토, 사면 및 옹벽 진단, 레저스포츠 시설 안전점검



www.safety.or.kr

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1, 3F 대한산업안전협회

[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]

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안내



 **대한산업안전협회**

문의전화 | 서울·경기·강원 / 02)860-4708
광주·전라 / 070)4909-0180
부산·경남 / 051)804-2096

대전·충청 / 042)628-2160
대구·경북 / 053)745-3151
제주지역 / 070)7720-2588

● 제3종시설물이란

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이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및 토목시설물 (교량·터널 등)의 구조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·고시된 시설물

● 관련법규

- 시설물안전법 제6조 (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)
- 시설물안전법 제8조 (제3종시설물의 지정등)
- 시설물안전법 제11조 (안전점검의 실시)
- 시설물안전법 제12조 (정밀안전진단의 실시)
-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 (국토부 고시 제2018-45호)

●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절차



● 제3종시설물의 실시시기

안전등급	A·B·C등급	D·E등급
정기안전점검	반기에 1회이상	1년에 3회 이상

※ 필요시 정밀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, 긴급안전점검 실시

●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

구분	대상 범위
공동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~ 15 층 이하 아파트 ○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㎡초과, 4층 이하 연립주택
공동주택 외 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연면적 1,000㎡ 이상~5,000㎡ 미만의 판매시설, 숙박시설, 운수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의료시설, 장례식장, 종교시설, 위락시설, 관광휴게시설, 수련시설, 노유자시설, 운동시설, 교육시설 ○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㎡ 이상~1,000㎡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, 종교시설, 운동시설 ○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㎡ 이상~1,000㎡ 미만의 위락시설, 관광휴게시설 ○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~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,000㎡ 이상 ~30,000㎡ 미만의 건축물 ○ 5,000 ㎡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 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 ○ 준공 후 15 년이 경과된 연면적 1,000㎡이상의 공공청사
교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- 「도로법」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~ 100m 미만 교량 - 「농어촌도로정비법」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-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-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
터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-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터널 - 농어촌도로의 터널 - 법 1,2 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
육교	○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
지하차도	○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
기타	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·교량·터널·항만·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

● 비고

1.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제외한다.
2. 터널 중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은 제외한다.
3.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.
4. 노유자 시설 중 단독·공동주택, 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.
5. 대형건축물 중 건축법 제2조(건축물 용도)제2항제21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.
6.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,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. 다만,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.
7.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.
8.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여러 시설이 대형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복합건축물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각 시설의 연면적 합계로 계산한다.